



## 부속문서 3

# 무형유산 및 보유자 인정, 등록, 보호, 전수 및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 절차

몽골 정부 결의안 첨부자료 (초안)

---

## I. 목적

이 절차의 목적은, 몽골 헌법, 문화 관련 국가정책, 문화 관련법, 무형유산보호법, 기타 몽골의 법령, 몽골이 승인하고 인준한 국제협약 및 협정에 명시한 개념 및 원칙에 따라, 몽골의 무형유산 및 보유자들의 발굴, 등록, 보호, 전수, 발전에 대한 국가 지원과 관련된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다.

## II. 해석

1. 무형유산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이하 협약)이 정한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의 양상 및 특성을 말하며, 몽골 무형유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a. 몽골어로 표현된 무형유산  
동화, 민요, 소원을 비는 가요, 찬가, 방언, 전통 관습에 관한 시, 소원을 비는 표현법, 허가 잘 돌아가지 않는 표현, 구전 전통 및 구전 문학 양식의 기타 형태
  - b. 전통 예능  
장가 및 단가, 흐미(목구멍 노래), 휘파람 노래, 모린 쿠르(말머리모양 바이올린), 플루트, 아만 쿠르(입 하프), 비 빌기(신체무용), 째(가면무용)을 포함한 민속 가요와 무용.
  - c. 사회적 관습, 의식, 축제  
전통 관습, 의식 행사, 찬양, 축제

- d. 자연 및 야생과 관련한 지식 및 관습  
 땅, 물줄기, 하늘, 기상형태에 대한 관측, 자연과 땅에 대한 접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식 및 기술과 성소, 자연보호 관습 및 관습적 제약과 관련한 전통 유산
  - e. 전통 공예  
 몽골인의 금속세공, 목공, 목조 공예, 바느질, 자수, 펠트 퀼트, 가죽 공예, 축산 가공 기술에 관한 전통 공예 기술 및 기교
2. 무형유산 보유자(이하 보유자)는 무형유산 및 그 보유자를 인정하는 국가 위원회의 평가와 승인을 바탕으로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보증한 개인을 말한다.
  3. 무형유산 전수자 (이하 전수자)는 공식 등록된 개인으로서 관련 지식에 대하여 현재 유산 보유자로부터 교수를 받고 있으나 ‘무형유산 보유자’ 증명서는 아직 받지 못한 개인을 말한다.

### III. 무형유산 및 보유자의 원형 지정 및 등록

1. 무형유산의 지정 및 등록을 위한 국가 위원회의 설치와 절차에 관한 규칙은 2003 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개념 맥락에서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의 훈령에 의하여 승인된다.
2. 무형문화유산 지정 및 등록을 위한 국가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는 관련분야 NGO 대표들과 학자, 연구자들로 구성된다.
3. 국가위원회는 정부 및 비정부 기관, 교육 학술 기관, 협력자, 학자들과 협조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수행한다.
4. 국가 위원회는 무형유산과 보유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무형유산 목록’ 초안을 작성하여 교육문화관광부 책임 부서를 통하여 교육 문화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목록이 타당한지를 승인한다.
5. 국가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과 보유자에 대한 보고서, 토의 내용, 기타 문서를 토대로 논의하여 ‘몽골 무형유산 목록 초안’을 마련한다.

6. 국가위원회는 ‘지역 무형유산 및 보유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무형유산을 ‘몽골 무형유산 목록 초안’에 포함할 수 없다.
7. 국가위원회는 무형유산과 보유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에게 ‘몽골 무형유산 목록’ 초안을 제출한다. 장관은 유효한 목록에 대하여 승인한다.
8.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은 목록을 승인하기 전 필요에 따라 특정 부분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9. 유산 보유자로 공식적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인 및 집단은 첨부 문서 1의 서식에 따라 문화예술 위원회의 매년 4월 1일 이전에 지원해야 한다.
10. 문화예술위원회는 가능성 있는 유산 보유자를 확인하고 발탁하기 위하여 12월 1일 이전에 매체를 통하여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연간 공고문을 발행하고 배포 한다.
11. 매년 공고가 이루어진 직후에 문화예술 위원회는 유산 보유자 등록 신청 서류를 검토, 요약, 선별하여 국가 위원회에 제출하며 국가위원회는 서류를 검토하여 6월 15일 이전에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에게 그 결정 내용을 제출한다.
12. 국가 위원회는 무형유산 목록 등록을 위하여 제출된 신청자의 신청서 및 동봉 자료를 검토하며 직접 참관 및 증거자료 기록(DVD, VCD, CD 녹화, 음성 녹음 테이프, 디지털 사진) 등을 통하여 신청자의 우수한 재능과 기교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무형유산 목록과 향후 개정 내용은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발급한 결의안에 따라 8월 1일까지 승인된다.
14. 문화예술위원회는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발급한 결의안 이후 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승인 받은 유산 보유자에게 증명서(부록 2)를 제공한다.
15. 무형유산센터는 유산 보유자의 등록 신청을 위하여 동봉한 문서 자료(일반 및 디지털 사진, VCD, DVD, CD, 음성 녹음테이프, 그림, 기타 물적 항목) 및 국가 위원회의 선정 과정 중 산출된 기록 테이프, 사진, 기타 문서 자료를 보존한다.

16. 비밀스러운 무형문화유산은 개인, 집단, 가족의 소유물이 아니라 문화 유산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지원한다.

#### IV. 무형유산 보유자의 권리

1. 보유자(개인 및 집단)는 무형유산 및 관련 기술을 자신의 소유권에 따라 시연, 홍보, 공연할 수 있고, 관련 법률 체계 내에서 박물관에 전시, 진열하며, 비정부기구를 설립하고 교수 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산 보유자로서의 소유권의 양도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보유자가 보유한 무형유산과 관련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위원회, 교육문화과학부 및 책임 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유자는 자신이 인정받은 무형유산 관련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한 방송, 신문 및 잡지 기재, 음악회 및 전시회를 통한 전시, 광고 및 연구 논문을 통한 출판, 공개적 복사 및 배포의 경우, 이와 관련된 소재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협조하며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
4. 보유자는 유산 학습자를 발탁하고 우수한 기술과 재능의 전승과 관련한 자신만의 방침, 학습법과 활동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 V. 무형유산 보유자의 의무

1. 보유자는 자신의 우수한 재능과 기술,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한 전통적이고 민족적인 특유한 무형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 보유자는 매 2년마다 문화예술위원회와 협정을 맺어야 한다.
3. 보유자는 신청서 자료에 명시한 정보, 즉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 소재지, 행정적 관련 단체, 멤버십, 유산 학습자에 관한 통계, 학습자들의 성취 사항, 존속하거나 변경된 사업 기회 등과 같은 변경이 있을 때마다 문화예술위원회에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보유자는 전수자에게 자신의 우수한 재능과 기술을 충분히 가르치고 전수하여야 하며 무형유산 목록의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학습자들이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유자는 문화예술위원회에 연간보고서를 4 사분기 내에 제출하고 국가 및 국제적인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6. 보유자는 교육문화과학부, 국가 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연간 보고 기간 중 유산 학습자에게 전수한 기술과 재능을 자신에 대한 수행 평가의 일부로서 시연하여야 한다.
7. 보유자는 현대 기술 및 과학, 기존의 필요와 수요의 맥락에서 자신의 무형유산 및 우수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고려하고 추구하여야 한다.
8. 보유자는 몽골의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 자신의 우수한 재능과 기술을 인식하고 이를 세계 무형유산 목록에 등재시키고 국제적인 활동 무대에서 몽골의 명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보유자의 신청서 자료에 명시된 정보의 변경, 관련 단체의 해산, 유산 보유자의 사망 또는 기능적 역량의 상실, 법률상 배상책임의 부담 또는 기타 비상 상황인 경우에는 유산 보유자 및 대리인은 문화예술위원회에 그러한 상황을 14 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VI. 전수자의 권리와 의무

1. 전수자는 보유자를 선택하고 보유자의 우수한 재능 및 기술 습득에 관한 신청서 제출의 권리를 가진다.
2. 전수자는 훈련 방침, 학습법 및 활동에 관하여 문화예술위원회에 자신의 의견, 요청, 불만을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훈련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전수자는 유산 보유자의 선택된 우수한 재능과 기술을 배우며 무형 유산 보유자 목록의 등록을 준비해야 한다.

4. 전수자는 관련 평가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교육문화과학부, 국가 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보고 기간 중 직접 학습한 재능과 기술을 시연하여야 한다.

## VII. 정부기관의 권리와 의무

1.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위원회, 무형유산 센터, 대중매체, 관련 지방 기구 및 기관은 다음의 이슈들, 즉 무형유산에 관한 견실한 정책의 개발, 관련 법률 및 규정 체제의 강화, 연구 이행, 목록 체계 구축, 유산 보유자와의 소통 및 활동 지원, 무형유산의 다음 세대 전승, 일반 대중에게 유산 보유자 광고 및 소개, 대회 개최 및 승자 선발, 인정받은 유산 보유자에 대한 보상이, 연간 계획에 반영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2. 문화예술위원회는 보유자와 체결한 협정의 조건에 대한 규약을 규정하고 감찰하여야 한다.
3. 정부 단체 및 기관은 유네스코 몽골 국가 위원회와의 협력을 보장하여야 하며 자신들의 활동 범위 내의 전문적 비정부기구, 전문가 및 학자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4. 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 위원회의 무형유산에 관한 권고 사항을 준수하며 일부 보유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제안서를 매년 1월 1일 내에 검토하고 특별 절차에 의한 승인을 위하여 교육문화과학부에 해당 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문화예술위원회 및 관련 지방 기관은 모든 단체와 일반 대중에게 관련 권고 사항을 제공하고 무형 무형유산의 보호, 전승, 발전에 관한 최적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위원회, 무형유산 센터, 대중매체, 관련 지방 단체 및 기관은 무형 무형유산의 지정, 인정, 전승, 발전, 국가 지원의 제공, 두루 인정받은 보유자에 대한 보상 및 소개, 국제적인 활동 무대에서 몽골의 명성을 제고에 관한 대중 인식 제고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7.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위원회, 무형유산 센터, 대중매체, 관련 지방 단체 및 기관은 보유자의 마감일 내 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활동을 시행하고 규제하며 보유자들이 국가적 및 국제적 관련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상기 정부 단체 및 기관은 보유자의 권리와 지위를 취소하고 관련 전수자에게 양도하는 신청서를 국가 위원회에 제출하는 일뿐만 아니라, 동 절차 규정의 제 5 조 9 항의 조항 및 기타 사유에 따라 보유자의 증명서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9.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은 보유자의 증명서를 취소하고 문화 보유자의 권리를 양도하는 일과 관련하여 국가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를 바탕으로 훈령을 공포하고, 문화예술위원회는 그 결정 사항을 공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